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31일, 김현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6년 4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9.15.)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의원)

현행법은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간 공공 및 민간에서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왔으나,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데이터의 소재 정보가 분산되어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데이터 소재 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가 미흡하여 인공지능 학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

현행 규정만으로는 데이터 소재정보를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플랫폼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인공지능 학습 및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유통·활용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의 탐색·연계를 촉진하고 인공지능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정부는 국가 전체 공공·민간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여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유통 정보를 단일 청구로 제공하고자 2025년 1월부터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인 원-윈도우(One-Window)를 운영 중임.
- 그런데, 원-윈도우의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연계 현황을 보면 2025년 12월 기준 민간 데이터 플랫폼 18개 중 9개(50%)가 연계 중이고 공공 데이터 플랫폼의 경우에도 156개 중 72개(46%)만 연계되어 있어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지난 2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과제로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민간·공공 데이터 소재 연계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품질을 고도화¹⁾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음.
-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가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을 뿐,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플랫폼 연계 및 데이터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연계 등 필요한

1)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AI 학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등 데이터 소재 정보 등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되며,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AI가 직접 데이터를 검색·활용하기 용이하도록 MCP(Model Context Protocol) 제공 등 AI 친화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의 연계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 연계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조한 공공데이터 플랫폼의 연계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도 원-윈도우에 대한 공공데이터 플랫폼 연계를 요청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연계 실적이 미흡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연계 요청을 수인하도록 법률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인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안 제19조제5항에 따라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될 것인바, 위임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장 한준호)

개정안은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등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합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대통령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안 제19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이 법이 공포된 날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및 부칙).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5항 중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축·운영”으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 ----- ----- ----- ----- --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 -----.	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 간의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플랫폼(이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u> <u>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 ----- ----- 등과 제2항에 따른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 부칙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등과 제2항에 따른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플랫폼”을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등”을 “등과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 간의 소재(所在) 정보를 연계하는 플랫폼(이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 -----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 --.
<u><신 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 간의 소재(所在) 정보를 연계하는 플랫폼(이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u><신 설></u>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소재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⑤ ----- ----- <u>등과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u> ---.
---	--